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698

발의연월일: 2023. 8. 8.

발 의 자:이해식・김한규・박상혁

허 영·김승원·소병훈

강병원 • 이형석 • 이학영

김병욱 • 진선미 • 우원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등과 같은 상업용 건축물도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계실·승강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복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업·어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한 농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

원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2호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기계실·변전실·승강기·주차장 등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복구를 위한"을 "복구 및 농작물·수산물·임산물·염(鹽)산물의 피해 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용 <u>건축물의</u> 복구비 지 2. ------건축물 및 그 부 원 속시설(기계실·변전실·승강 기 • 주차장 등을 말한다)의--

<신 설>

- 3. ~ 6. (생략)
-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 7. ------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 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8. 9. (생략)
- ④ ~ ⑦ (생 략)

2의2.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_		

- 3. ~ 6. (현행과 같음)

--복구 및 농작물·수산물· 임산물·염(鹽)산물의 피해 등에 대한----

- 8. 9. (현행과 같음)
- ④ ~ ⑦ (현행과 같음)